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08. 4. 17 제정 2010. 12. 16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운영세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학회윤리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학회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3. 우리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학회운영세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우리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한다.

제4조(회의)

1.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은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할 경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위원장이 유고할 경우에는 후임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 부위원장 또는 간사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1.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 중에서 윤리규정 위반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보고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윤리위원회의 권한)

1. 우리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9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야 한다.

제1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우리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3. 징계의 구체적 종류 및 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우리 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제·개정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회 저작물 관련 윤리 지침

2008. 4. 17 제정 2010. 12. 16 전면개정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학회 발간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2조(표절의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3조(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4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를 평가할 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기술자 윤리강령

콘크리트 기술자는 전문가로서의 지식, 품위, 명예를 유지하고, 콘크리트 관련 건설산업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인식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콘크리트 기술자는 직무 수행의 우선순위를 인간, 안전, 복지에 둔다.
2. 콘크리트 기술자는 전문지식과 기술로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와 명예를 존중한다.
3. 콘크리트 기술자는 실무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콘크리트 기술의 발전과 전문적 능력의 증진에 매진한다.
4. 콘크리트 기술자는 법령과 소정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불공정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 기술자는 일반시민, 고객, 동료 및 경쟁자에게도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봉사한다.
6. 콘크리트 기술자는 현재와 미래의 생태 변화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항상 신중하게 대처한다.

2000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